
- '24. 11. 27 ~ 28. 대설피해 -

종합안내서

2024. 12. 19

화성시

재난대응과

목 차

I. 피해사실확인서, 간접지원내용

1. 분야별 문의처.....	4
2.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방법.....	4
3. 피해자 지원항목.....	5

II. 지원항목별 세부내용

1. 국세 납세유예.....	9
2. 지방세 등 감면 및 징수유예.....	10
3.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.....	11
4. 상하수도요금 감면.....	12
5. 피해주민 금융지원.....	13
6.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.....	15
7.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.....	16
8.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.....	17
9. 국·공유재산, 국유림 사용료 등 감면.....	18
10.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.....	19
11.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.....	20
12. 과태료 징수 유예.....	21
13. 자동차·건설기계 검사기간 연장·유예.....	22
14. 심리정서 상담지원.....	23
15. 공공임대 주거 지원.....	24
<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추가 지원(16번부터 26번까지) >	
16. 건강보험료 감면.....	25
17. 전기요금 감면.....	26
18. 통신요금 감면.....	27
19. 도시가스요금 감면.....	28
20. 전파사용료 감면.....	29
21. 우체국 예금 수수료 등 면제.....	30
22. TV 수신료 면제 통신요금 감면.....	31
23. 고용·산재보험료 경감.....	32
24. 농지보전부담금 면제.....	33
25.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.....	34
26. 지역난방요금 감면.....	35

피해사실 확인서, 간접지원 내용

1

분야별 문의처 (담당부서)

분 야		화성시청 담당부서
총괄		· 재난대응과 (031-5189-2422, 3978, 2346, 3456, 1620)
정부지원금 관련	· 소상공인 피해	· 지역경제과(031-5189-7220)
	· 축산업 피해	· 축산정책과(031-5189-1825)
	· 농업 피해	· 농업정책과(031-5189-6974)
요금 감면	· 상수도	· 맑은물운영과(031-5189-3285)
	· 하수도	· 하수과(031-5189-6863)
발급 수수료 면제	·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	· 민원행정과(031-5189-2648)
과태료 징수 유예	· 과태료 납부 기일 등 연기	· 징수과(031-5189-2196)
검사기간 연장 유예	· 자동차·건설기계 정기검사	· 차량등록과(031-5189-3312)

2

피해사실확인서, 재해중소기업(소상공인)확인증 등 발급방법

구분	발급처	구비서류	비고
피해사실 확인서	소관부서	· 피해자 본인 방문: 본인 신분증 · 피해자 가족 방문 : 방문자 신분증, 피해자와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등)	
재해중소기업 (소상공인) 확인증	기업지원과	① 본인 신분증(영업주) ※ 피해신고서가 NDMS에 입력되고 피해사실이 확정된 경우 발급	

연번	지원항목	지원내용	담당기관 (연락처)	페이지
1	국세 납세유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가가치세 신고,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 기한 연장(3.25.까지)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징수 집행 유예 신청시(1년) 	국세청 화성세무서 (031-8019-1200)	9
2	지방세 감면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방세 신고·납부기한 연장 (6개월, 최대 1년) 지방세 고지유예·분할고지·징수유예(6개월, 최대 1년) 체납처분 유예(1년, 최대2년), 지방세외수입 부담 완화 	화성시 세정과 (031-5189-2182) 화성시 징수과 (031-5189-2195)	10
3	국민연금 납부예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(최대 1년) 연금보험료 연체금 징수예외 적용(6개월) 	국민연금공단 화성오산지사 (031-354-4663, 4665~6)	11
4	상하수도 요금 감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상하수도 요금 감면 	맑은물운영과 (031-5189-3285) 하수과 (031-5189-6863)	12
5	금융 지원	<p>농업(축산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피해 농가에 대해 기존 ‘농업농촌진흥기금’ 용자이자 1% 전액 감면(최대 2년) * 신청 및 지원절차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피해사실확인서 발급(시청) 용자이자 신청(NH농협은행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필요서류: 주민등록증, 피해증빙자료 <p>농협(농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규자금 지원시 우대금리 2.0%(농업인 2.6%) 제공 (기업자금 5억원/가계자금 1억원) 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자납입 유예 기존대출 재약정 및 기한연기 예외 취급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유예(채무자 대출유형 확인) <p>NH농협손해보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험료 및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3개월간 유예 	<p>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 (031-369-9000)</p> <p>농협손해보험 (1644-9000)</p>	13~ 14
		<p>일반은행 2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2.0%(고정)</p> <p>중소기업진흥공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긴급경영안전자금지원(재해중소기업지원) 2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1.9%(고정) 경기신용보증재단 최대 5억원,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은행금리 이자보전(1.5% 지원) ※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책 [세부내용 15p 확인] 	<p>중소기업 진흥공단 정책자금 안내콜센터 (1811-3655) 경기신용 보증재단 (1577-5900)</p>	

연번	지원항목	지원내용	담당기관 (연락처)	페이지
6	보훈대상 위로금 지급	◦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원	국가보훈부 경기남부보훈지청 (031-259-1788)	15
7	지적측량수수료 감면	◦ 건물·토지의 자연재해 피해복구를 위한 측량 시 해당 연도의 지적측량 수수료 50% 감면	화성시 토지정보과 (031-5189- 1660) LX 화성지사 (031-8077- 0633)	16
8	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	◦현역병 입영일자 연기	경인지방병무청 (1588-9090)	17
9	국·공유재산, 국유림 사용료 등 감면	◦ 국·공유재산 사용료·대부료 등 감면 (피해로 사용·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)	해당 재산 운용·관리기관	18
10	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	◦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 시 발급 수수료 면제	화성시 민원행정과 (031-5189- 2648)	19
11	상속세 재해손실 공제	◦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·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	화성세무서 (031-8019- 1200)	20
12	과태료 징수 유예	◦ 과태료 납부기일 등 연기(1년 이내)	화성시 징수과 (031-5189- 2196)	21
13	자동차·건설기계 검사기간 연장·유예	◦ 당해 자동차·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·유예	화성시 차량등록과 (031-5189- 3312)	22
14	심리정서 상담지원	◦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·양육·보호 등 가족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, 가족 상담 등 지원	화성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(031-352- 0175)	23
15	공공임대 주거 지원	◦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(연장 가능)	화성시 주택정책과 (031-5189- 3848)	24

연번	지원항목	지원내용 (특별재난선포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 항목)	담당기관 (연락처)	페이지
16	국민건강보험료 경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건강보험료 30~50% 경감 ◦ 세대경감 지원 	국민건강 보험공단 화성지사 (1577-1000)	25
17	전기요금 감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피해 점포 1개월분 요금 100% 면제 	한국전력공사 화성지사 (123)	26
18	통신요금 감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이동전화 요금(세대당 1회선 12,500원) 감면(1개월) ◦ 시내·인터넷전화 요금(월이용요금100%) 감면(1개월) ◦ 초고속인터넷(월이용요금의 50%) 감면(1개월) ◦ 유료방송(기본료의 50%) 감면(1개월) 	각 통신사	27
19	도시가스 요금 감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피해 점포 1개월분 요금 100% 면제 	한국가스공사 (031-400- 7318)	28
20	전파사용료 감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분 100% 면제 	전파이용CS센터 (080-700- 0074)	29
21	우체국 예금·보험료 납입 유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재해복구를 위하여 설치된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발송하는 우편물 우편요금 무료 ◦ 피해자의 보험료 납입유예 및 예금 취급 수수료 면제 	화성우체국 (1599-1900) (1599-0100)	30
22	TV 수신료 면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1월 1일부터 TV수신기 재설치시까지 면제 (직권등록말소) 	한국방송공사(1588-1801)	31
23	고용·산재 보험료 경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고용보험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◦ 고용유지지원금 지급, 직업능력훈련 출결요건 완화 ◦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지원 	근로복지공단 (1588-0075)	32
24	농지보전부담금 면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※ 부지 총 면적이 660㎡이하인 경우만 해당 	화성시 허가민원과 (031-5189- 4287) (031-5189- 2629)	33
25	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 징수 예의·체납 처분 유예(3~6개월 내) 	국민건강 보험공단 화성지사 (1577-1000)	34
26	지역난방요금 감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기계실 멸실·파손·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한시적 요금 감면 	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 (031-8003- 1521~2)	35

※ “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”는 병무청 제공 예정

지원항목별 세부내용

□ 지원근거

- 「국세기본법」 제6조,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및 제2조의 2
- 「국세징수법」 제13조 및 제14조
- 「국세징수법시행령」 제12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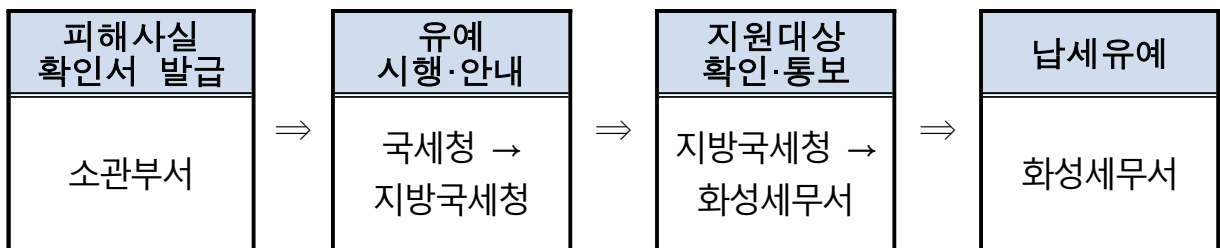
□ 지원대상

- 재난피해자 중 국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하는 자 및 이미 고지 받은 국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

□ 지원내용

- (신고·납부 기한연장) 신고·납부하여야 할 국세가 있는 경우 신고·납부기한 연장 가능
- (징수 유예)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징수 집행 유예(1년 범위 내)

□ 지원절차



□ 접수방법

- 소관부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→ 세무서 방문 신청

□ 지원근거
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26조 및 「지방세징수법」 제25조
-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05조 및 「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」 제93조
-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「질서위반 행위규제법」 제24조의3

□ 지원대상

- 천재지변 등으로 지방세 감면 또는 징수유예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□ 지원내용

- 지방세 신고·납부기한 연장 (6개월, 최대 1년)
- 지방세 고지유예·분할고지·징수유예(6개월, 최대 1년)
- 체납처분 유예(1년, 최대 2년), 지방세외수입 부담 완화

□ 지원절차

- (감면) 화성시에서 지방세감면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 시의회에서 의결 후 감면 지원
- (징수유예) 민원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방문, 팩스 등으로 화성시청 납세자보호관에 신청, 세목 담당 부서의견 조회 후 승인 여부 결정
- (체납처분 유예) 피해 사실이 확인된 납세자의 신청에 대하여 체납 처분유예

□ 지원근거

- 「국민연금법」 제91조, 「국민연금법 시행령」 제60조

□ 지원대상

- 재난으로 인적·물적 피해를 입은 자
 - ※ 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,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또는 「재해구호법」에 따른 보조나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

□ 지원내용

- 납부예외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
 - ※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보험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음
 - ※ 납부예외 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 그 예외 사유의 종료 여부 확인
- 연금보험료 연체금 징수예외 적용 (6개월)

□ 신청방법

-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

□ 지원근거

- 「수도법」 제38조, 「하수도법」 제65조
- 「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」 제34조, 제35조
- 「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」 제22조
- 「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 제24조
- 「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」 제19조

□ 지원대상

- (상수도) 특별재난지역 내 일부 해당 대상
- (하수도)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(피해자)

□ 지원내용

- (상수도)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재산피해 정도가 심하여
요금을 납부하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전액 감면
- (하수도) 전액면제 또는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등

※ 화성시 지방자치조례에 따름

□ 신청방법

- (상수도) 수도사용요금 감면신청서를[별지 제19호 서식]를 작성하여
구비서류(피해사실확인서)와 함께 제출
- (하수도) 하수도요금 감면신청서[별지 제11호 서식]를 작성하여
구비서류(피해사실확인서)와 함께 제출

□ 복구자금용자

구분	지원항목	지원기준	관계법령
복구 자금 용자	축산업 농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농협(축산업) - 피해 농가에 대해 기존 '농업농촌진흥기금' 용자이자 1% 전액 감면(최대 2년) * 신청 및 지원절차 1. 피해사실확인서 발급(시청) 2. 용자이자 신청(NH농협은행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필요서류: 주민등록증, 피해증빙자료 	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 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농협(농업) - 신규자금 지원시 우대금리 2.0%(농업인 2.6%) 제공 (기업자금 5억원/가계자금 1억원) - 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자납입 유예 - 기존대출 재약정 및 기한연기 예외 취급 -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유예(채무자 대출유형 확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NH농협손해보험 - 보험료 및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3개월간 유예 	

※ 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(☎031-369-9000) 및 NH농협손해보험(☎1644-9000)

□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책

※ 재해 관련 중소기업 지원기관 자금용자 안내 (재해중소기업 확인증발급)

지원주체	사업명	지원대상	지원형식	지원내용	신청
경기신용 보증재단	특별경영자금 용자	재해확인증 발급 중소기업(소상공인)	은행연계 용자	(중소기업) 5억원 이내 대출 (대출금리에 1.5% 이자보전)	24.12.26 한 (25년 1월)
				(소상공인) 5천만원 이내 대출 (대출금리에 2.0% 이자보전)	
경기신용 보증재단	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	재해확인증 발급된 중소기업	보증지원	3억원 한도내에서 특별보증	25년 1월

▶ 경기도 재해 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용자 안내 (2024.12.26한 접수)

- 시행주체 : 경기신용보증재단 (전화 031-366-8070, 내선 109번,111번)
- 지자체로부터 “재해중소기업 확인증” 발급받은 중소기업, 소상공인
- 대출기간 : 4년 (1년 거치 3년 균분상환)
- 취급은행 :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SC은행
- 용자한도 : (중소기업)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.(피해금액 범위내)
(소상공인)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.(피해금액 범위내)
- 신청방법 : G머니시스템(<http://g-money.gg.go.kr>) 및 경기신보 영업점

▶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 경영자금 용자 안내

- 시행주체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- 지자체로부터 “재해중소기업 확인증” 발급받은 중소기업
- 대출기간 : 5년 이내 (거치기간 2년 포함)
- 취급금지 : 1.9% 고정금리 적용
- 용자한도 : 연간 10억원 이내.
- 신청일시 : 2025년 1월초 예상

□ 지원근거

- 「보훈기금법」 제5조 및 「보훈기금법 시행령」 제6조
- 재해위로금 지급규정(국가보훈부 훈령)

□ 지원대상
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및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대상자

□ 지원내용

피해유형	피해기준	지원액(만원)
인명피해	보훈대상자 또는 그와 생계·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의 사망·실종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부상	· 사망·실종 500 · 부상 30
주택피해	보훈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, 직계존·비속 명의 주택의 전파·반파·침수	· 전파 500 · 반파 250 · 침수 50
기타 재산피해	보훈대상자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자경농경지, 농림·축·수산물 및 그 재배 등 경영에 필요한 시설·장비 또는 가재·도구 등 피해	· 피해금액 1,000만원 초과 시 50 · 피해금액 50만원 초과, 1,000만원 이하 시 30
공동이용 시설피해	국가유공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훈회관, 상이군경복지회관, 자활용사촌복지광장 등 공동이용시설 피해	· 피해금액 1,000만원 초과 시 500 · 피해금액 500만원 초과, 1,000만원 이하 시 250

※ 인명·주택피해와 기타 재산피해가 동시에 발생하면 인명·주택피해에 대해서만 지급

□ 지원절차

- 피해신고(재난피해자) → 피해사실 확인(읍면동사무소) → 지원대상 확인·통보(보훈부 → 경기남부보훈지청) → 재해위로금 지급(경기남부보훈지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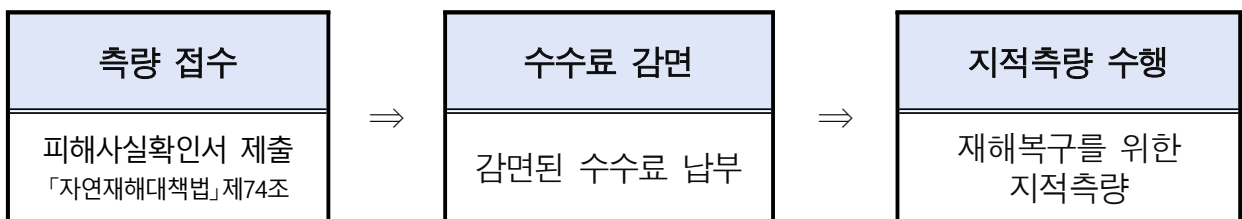
□ 지원근거

- 「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23조제2항

□ 지원내용

- (목적) 자연재난 피해 주민의 피해 수습·복구 지원
- (내용)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
- (감면율) 해당 연도 지적측량 수수료의 50%
- (대상) 자연재해로 발생된 건물·토지의 피해복구를 위한 측량,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74조의 피해사실확인서 제출
- (제외) 재난 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한 경우,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경우

□ 지원절차



□ 신청절차

- 토지소유자 본인이 피해사실확인서를 아래로 제출하여 신청
 - * 화성시청 민원실 측량접수창구(☎031-5189-1660, 3018)
 - *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성지사 사무실(☎031-8077-0633, 0601)

□ 지원근거

- 「병역법」 제61조, 「병역법 시행령」 제129조
- 「현역병 입영업무 규정」 제23조

□ 지원대상

- 병역판정검사, 재병역판정검사,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본인이나 가족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병역의무 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

□ 지원내용

- 60일 범위 내에서 병역판정검사, 재병역판정검사, 현역병 입영일자, 사회복지무요원 소집일자,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연기
- ※ 연기원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, 전화로 연기 신청 가능

□ 지원절차



□ 신청방법

- 병무청 누리집 → 병무민원 → 병역판정검사, 현역·상근입영, 사회복지무, 대체역중 선택 → 연기(원) 신청
- 병무민원상담소(☎1588-9090) 또는 전 지방병무청 유선 신청

□ 지원근거

- 「국유재산법」 제34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, 제34조
-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, 동법 시행령 제23조, 동법 시행규칙 제24조

□ 지원대상

-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으로 해당 재산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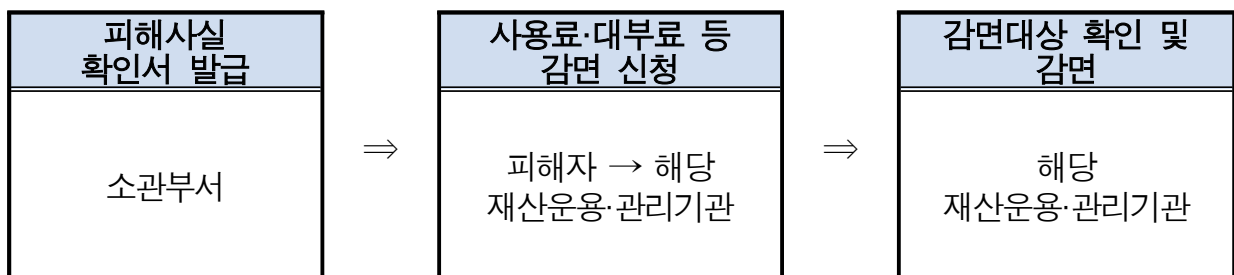
□ 지원내용

- 재난으로 사용 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만큼 사용료·대부료 감면

구 분	공유재산	국유재산	국유림
허가·대부기간	사용·수익하지 못한 기간 만큼 허가기간 연장	-	-
사용료·대부료	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·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	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면제	목적사업의 소득이 없거나 평년작의 50%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연도의 사용료·대부료 감면

※ 공유재산 사용료·대부료 감면 신청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 필요

□ 지원절차



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(대리발급 불가)

- 발급기관 : 전국 시,군,구 및 읍,면,동 행정복지센터
- 본인서명확인서발급 대상자 및 항목 신분 확인방법

* (내국인 / 재외국민) : 본인

[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대한민국여권(+여권정보증명서), 장애인등록증(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), 국가보훈등록증 중 1]

* (외국인) : 본인

[외국인등록증(외국인사실증명서+여권),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(거소사실증명서+여권)]

※ 매도용 본인서명확인서 발급

거래상대자의 성명(법인명), 주민등록번호(법인번호), 주소를 기재

□ 지원내용

- 피해 신고를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 시 발급 수수료 면제

※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중

□ 지원근거

-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23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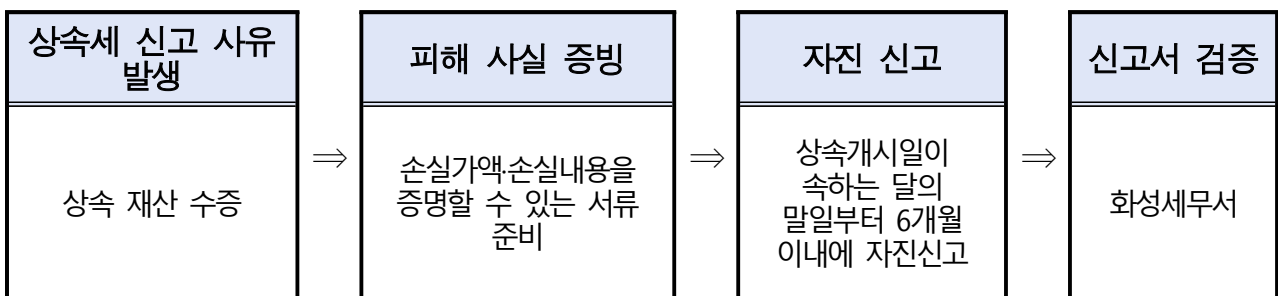
□ 지원대상

-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상속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하는 자
- 단,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에 의하여 그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

□ 지원내용

-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

□ 지원절차



□ 지원근거

-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, 동법 시행령 제14~16조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의3, 동법 시행령 제7조의2~4

□ 지원대상

- 재난피해로 지방세외수입 납기·체납유예 등이 필요하다고 화성시장이 인정하는 경우

□ 지원내용

- 과태료 납부기일 등 연기(1년 이내 범위)

□ 지원절차

- (납부기일 연기) 화성시청 부과 부서에 우편, 팩스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한 후 추후 신청서 제출

□ **지원근거**

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3조,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5조
-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13조,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31조의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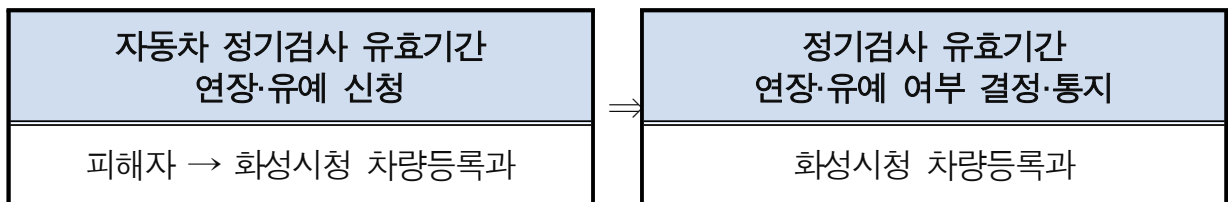
□ **지원대상**

- 천재지변(산불) 등 재난으로 자동차·건설기계의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동차 소유자

□ **지원내용**

- 당해 자동차·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·유예

□ **지원절차**



□ 지원근거

-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21조의 2·3·4

□ 지원대상

-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, 양육, 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

□ 지원내용

- 재난심리상담 지원 과정
 - 민원인 정신건강 평가 및 고위험군 선별 및 치료 연계
-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의뢰서 발급
 - 우울, 불안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 필요한 자

□ 지원절차

-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화를 통한 접수 후 방문상담 등 필요

□ 지원근거

-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23조의3

□ 지원대상

-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※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재민

□ 지원내용

-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가구에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(연장 가능)

□ 지원절차

- 행정복지센터- 지원대상자 신청서 접수(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 필수)
 - 주택정책과- 지원대상자 명단 통보 → LH- 지원대상자 계약 및 입주안내, 계약체결 및 입주

□ 제출서류

- 공급신청서,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대설피해 관련 현장 확인내역

※ 화성시 매입임대 공가 수가 매우 적어,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음

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추가지원

□ 지원근거

-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75조,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 및 제10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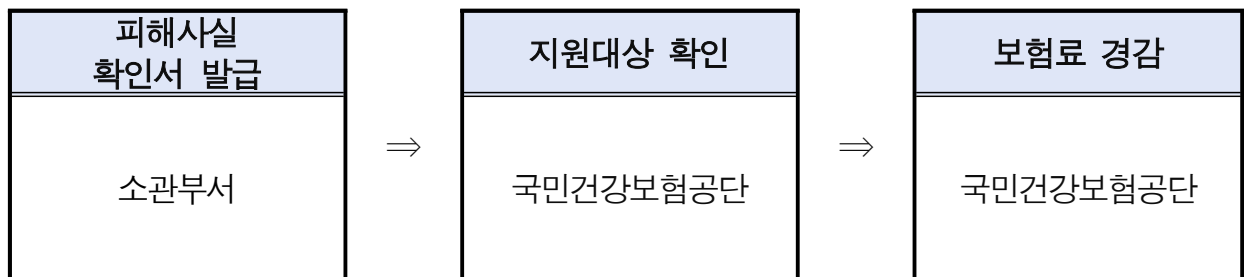
□ 지원대상

-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자연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 또는 사업장의 피해로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실제 생활이 어려운 세대

□ 지원내용

- 대설피해에 대한 건강보험료 30% ~ 50% 내 경감 지원

□ 지원절차



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추가지원

□ 지원근거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66조③ 6호
- 영업업무처리지침(한국전력공사 내부규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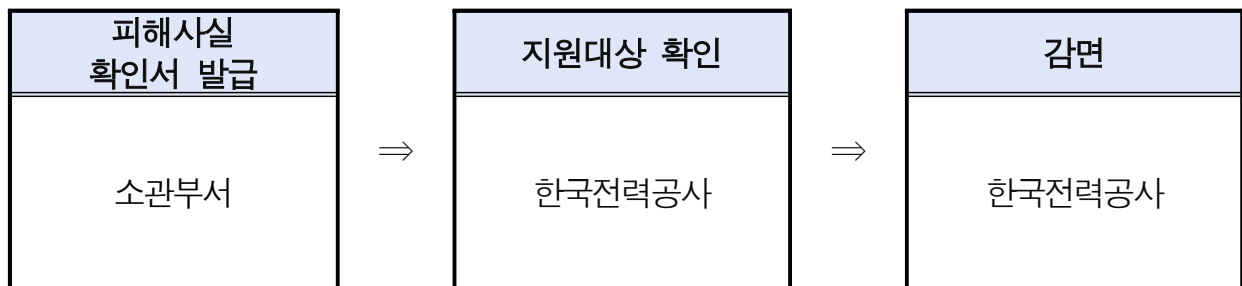
□ 지원대상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전력에 대해 지원

□ 지원내용

- 피해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

□ 지원절차



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추가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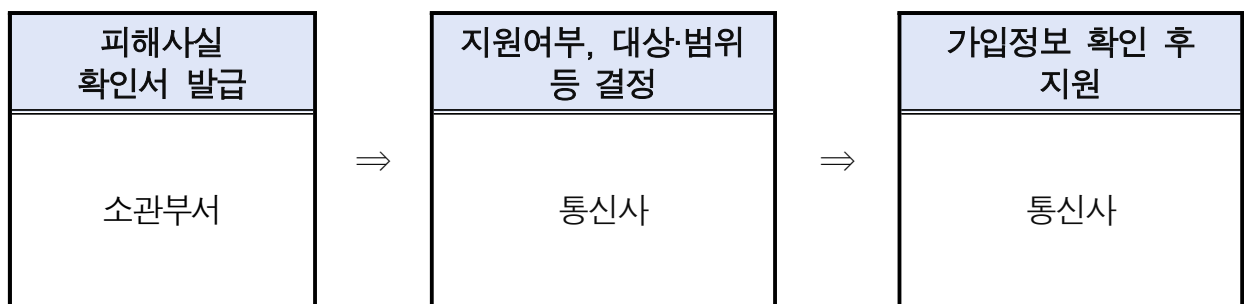
□ 지원근거

-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9조 및 시행령 제36조
 - ※ 감면여부 및 지원대상·기간·규모 등 감면규모는 이동통신사에서 재난규모,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 결정

□ 지원내용

- 이동전화 요금(세대당 1회선 최대 12,500원) 감면
- 시내·인터넷전화 요금(월이용요금 100%) 감면
- 초고속인터넷(월이용요금의 50%) 감면
- 유료방송(기본료의 50%) 감면
- ※ 각 이동통신사 별로 지원내용이 상이 할 수 있음

□ 지원절차



□ 신청절차

-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 통신사 문의

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추가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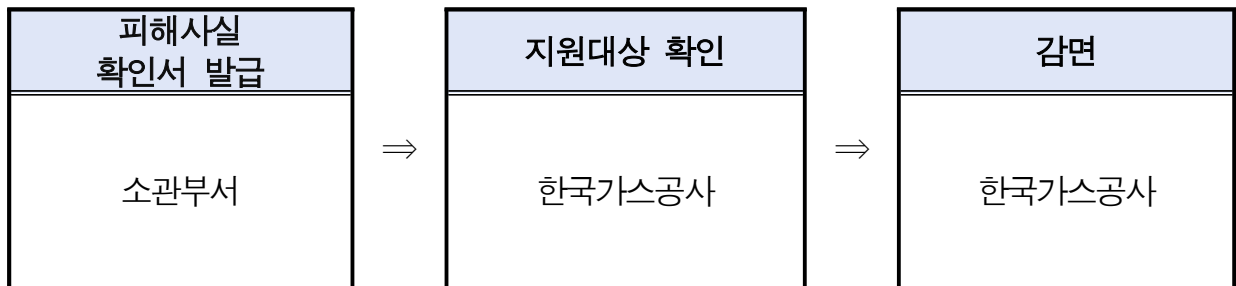
□ 지원근거

- 특별재난지역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(산업통상자원부)
- 천연가스 공급규정(한국가스공사 내부규정)

□ 지원내용

- 피해 주택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
- ※ (취사 사용) 전파·반파·침수 1,680원/월 등

□ 지원절차



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추가지원

□ 지원근거

- 「전파법」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「전기통신사업법」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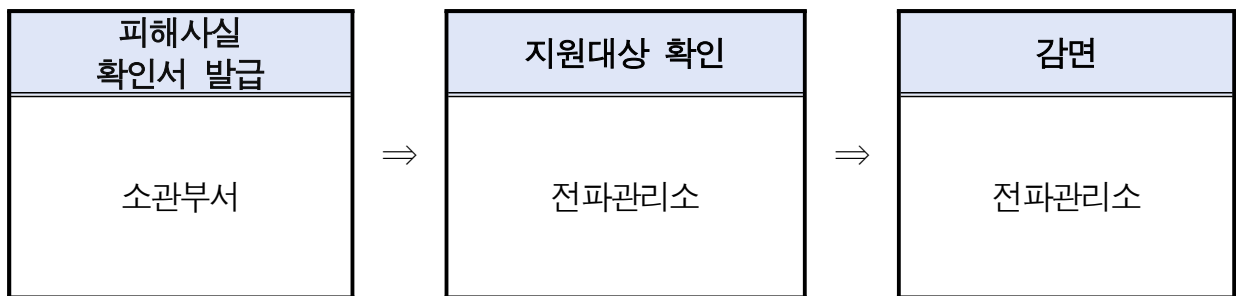
□ 지원대상

- 특별재난지역 등의 재난 피해자

□ 지원내용

- 피해지역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분 요금 100% 면제

□ 지원절차



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추가지원

□ 지원근거

- 「우편법」 제26조, 동법 시행규칙 105조
- 「우체국 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 제7조
- 「우체국 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조, 제16조, 제50조

□ 지원대상

- 재난지역의 우체국 고객

□ 지원내용

- 재해복구를 위하여 설치된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발송하는 우편물 우편요금 무료
- 천재지변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피해자의 보험료 납입유예 및 예금 취급 수수료 면제

※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, 공고하는 경우

□ 지원절차

- 지역 관할 우체국에서 일괄 처리

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추가지원

□ 지원근거

- 「방송법」 제64조
- 「방송법 시행령」 제44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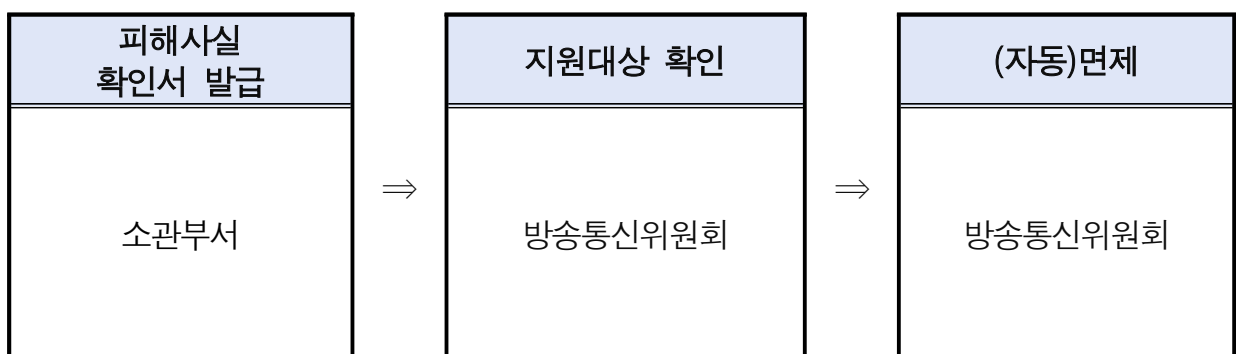
□ 지원대상

- 특별재난지역 등의 재난 피해자
- ※ 수신료 면제 여부와 기간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필요

□ 지원내용

- 특별재난지역 등의 피해 거주민이 소지한 TV 수상기 등의 수신료 일정기간(방통위 심의·의결로 설정)면제
- 기간 내 TV수신기 재설치 시까지 면제(직권등록말소)

□ 지원절차



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추가지원

□ 지원근거

- 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」 제22조의2
- 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」 제30조의2
- 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」 제28조의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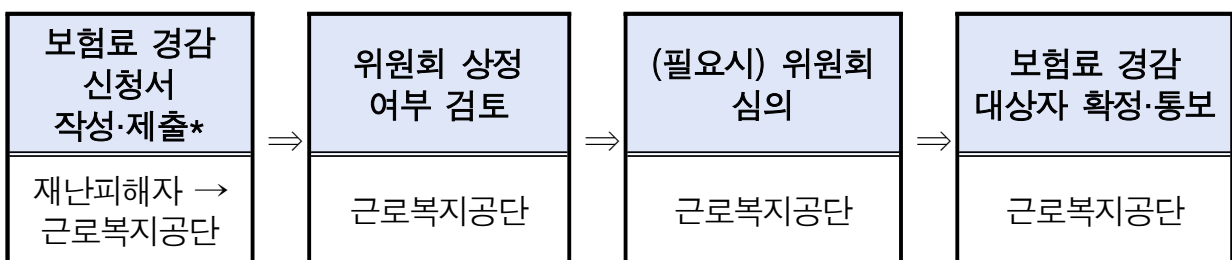
□ 지원대상

- 천재지변, 폭발 등 재난 피해를 입은 보험(고용보험, 산업재해보상보험) 가입자 중 보험료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*
 - * 폭발 및 전쟁의 피해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 등의 사유로 인해 보험료 경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또는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경감 여부 결정

□ 지원내용

- 보험료 경감대상자가 가입한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의 30% 감면

□ 지원절차



- * 재난 등 보험료 경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경감신청서(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34호의2) 및 경감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

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추가지원

□ 지원근거

- 「농지법」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(시행령 별표 2)

□ 지원대상

- 특별재난지역 등의 재난 피해자

*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안의 경우에 한함

□ 지원내용

-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복구를 위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되는 새로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(협의)를 득하여 신축·증축 또는 이축하는 *단독주택부지 농지보전부담금 면제(감면)

*부지 총 면적이 660m²이하인 경우만 해당

*기존대지에 신축·증축·이축은 해당없음

□ 신청방법

- 화성시청 허가민원과, 건축정책과에 농지전용허가(협의) 신청

* 건축, 토목 관련 다른 법률에 의한 인·허가 등이 필요

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추가지원

 지원근거

-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80조
-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51조
- 「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 제9조

 지원대상

-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재난피해자 중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대상자

 지원내용

-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 징수예외(3~6개월 내)

 신청방법
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신청

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추가지원

□ 지원근거

- 「열공급규정」 (난방공사 내부규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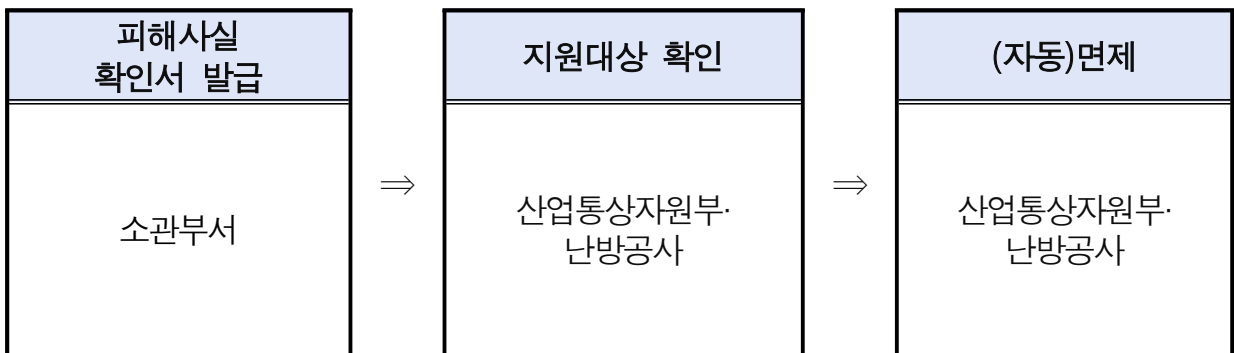
□ 지원대상

- 특별재난지역 등의 재난 피해자

□ 지원내용

- 기계실(열사용시설) 멸실·파손·침수로 인하여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한시적 요금 감면

□ 지원절차



연 번	건의 항목	건의 사항	소관부처 (기관)	검토결과
1	피해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NDMS 입력기간 연장 요청, 12.8.(일) → 12.15.(일) ⇒ 피해신고 대비 현장조사율(16.8%, 12.6.기준)이 낮아 추가 조사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기간 연장 (~12.13.) 	행안부 복구지원과	수용(완료)
2	특별재난 지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피해농가에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,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* 아직 피해금액이 선포 기준에 맞지 않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피해조사 마무리 예정 ⇒ 현재 중앙합동조사 진행 중으로 피해금액이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선포 예정 	행안부 복구지원과	수용(진행중)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특별재난지역 조속 지정 ⇒ 현재 중앙합동조사 진행 중으로 피해금액이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선포 예정 	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	수용(진행중)
3	응급복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새로 신축하려고 하는데 철거라도 빨리 진행했으면 함 ⇒ 농·축업을 통해 굴삭기·화물차 등 중장비 지원과 자원봉사자 등 인력지원 등을 추진. 또한, 지자체에 건축물관리법령에 따른 해체신고 등 철거 관련 절차 등을 농가에 안내 필요 	농림부 재해보험정책과	수용(진행중)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피해시설 복구 군부대 인력지원의 연속성 유지 필요 - 사과나무, 포도나무 등의 농장을 철거하는데 전문인력 필요 ⇒ 2개 부대에서 피해현장 투입 중, 추가 병력 필요시 경기도에서 추가 협조 요청 예정 	행안부 재난자원관리과	수용(진행중)

연 번	건의 항목	건의사항	소관부처 (기관)	검토결과
4	폐기물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철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원 기준 마련 요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른 피해지역과 달리 스티로폼, 콘크리트, 전선 등 철거에 시간이 오래 걸리며, 처리비용도 많이 듦 * 비닐을 제거하고 고철만 고물상에서 수거해가면 비용이 적게 드는데, 그렇게 하려면 철거 장비도 들어가야 해서 포도나무 훼손될 수 밖에 없어 농가에서 직접 비닐을 제거하는것은 쉽지 않아 나무절단 할 수 밖에 없음 ⇒ (농업분야)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재난지수의 10%를 재난지원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행안부와 협의 완료(12.2.) ⇒ (재해쓰레기)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해쓰레기에 대해서 국비 지원 예정 ⇒ (철거방식) 농장주와 지자체가 철거방식 협의하여 추진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농림부 재해보험정책 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환경부 생활폐기물과</p>	수용(진행중)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원예시설·축사 철거 비용 지원 ⇒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재난지수의 10%를 재난지원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행안부와 협의 완료(12.2) 	농림부 원예경영과	수용(진행중)
5	가축폐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가축 폐사 렌더링(rendering)* 비용 지원 ⇒ 가축재해보험으로 렌더링 비용 지원 중(손해액의 10% 추가 지원), 소의 경우 절박우 도축 후 판매 가능 ※ '24년 10월 말 기준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94.4%로 대부분의 축산농가가 보험을 통해 렌더링 비용 지원 가능 (가축재해보험 보험금 수령 시 재해대책비 중복 지급 불가) 	농림부 축산경영과	수용(진행중)

연 번	건의 항목	건의사항	소관부처 (기관)	검토결과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축사가 멸실되어 담보제공이 안되고, 대출도 불투명, 무이자 대출 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전액 용자 건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농장들의 담보능력이 없음. 기존 토지 및 건축물로 담보대출이 잡혀있음. 농신보 한도를 2억원 보다 상향해야 대출이 가능한 형편 * 축사 재건축과 가축 입식 비용에 대한 용자 지원(재건축·입식까지 소득이 없어 무이자 용자 희망) ⇒ 재해 피해농가에 대해 보증비율을 100%(통상 85%)로 상향 운영중, 보증한도(개인 15억원, 법인 20억원)도 최대 5억원까지 추가 적용중 	농림부 농업금융정책 과	기시행
6	금융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피해기업 복구지원 건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/특례보증/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(기존대출 상환기간 연장(3년), 신규대출 심사기준 완화) ⇒ 중소기업·소상공인을 대상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가능 ⇒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·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'24년 예산 소진으로 지원이 어려운 상황('25. 1월부터 지원 가능) -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 대출기준 완화 및 정책대출 확대 (한도상향, 이자감면 등) ⇒ 재해 피해농가에 대해 보증비율을 100%(통상 85%)로 상향 운영중, 보증한도(개인 15억원, 법인 20억원)도 최대 5억원까지 추가 적용중 	중소벤처기업부 비상재난담당관 농림부 농업금융정책과	기시행

연 번	건의 항목	건의사항	소관부처 (기관)	검토결과
6	금융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피해농가 영농복귀를 위한 지원 사업시 자부담 비율 감소 및 100% 무이자 용자 지원금 확대 ⇒ 재해대책 경영안정자금(연금리 1.5%, 5년거치 10년상환) 운영중	농림부 재해보험정책 과	기시행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용자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(농신보) 대출 기준 완화 ⇒ 재해 피해농가에 대해 보증비율을 100%(통상 85%)로 상향 운영중, 보증한도(개인 15억원, 법인 20억원)도 최대 5억원까지 추가 적용중	농림부 농업금융정책 과	기시행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농업정책자금·축산정책자금(사료자금 등) 상환유예(최소 3년 이상) 및 이자 감면 ⇒ 현재 농가단위 피해율 30~50%, 1년, 50%이상 2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(면제) 운영중	농림부 재해보험정책 과	기시행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축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⇒ 재해대책 경영안정자금(연금리 1.5%, 5년거치 10년상환)을 운영중	농림부 재해보험정책 과	기시행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영농자재 구입 등을 위한 영농 운전을 위한 재해대책 경영자금 지원(국비, 도비) - 피해 농가 회복을 위한 경영비 지원(3년분) ⇒ 재해대책경영안정자금을 일반작물은 1년, 과수 등은 3년까지 지원중	농림부 재해보험정책 과	기시행

연 번	건의 항목	건의사항	소관부처 (기관)	검토결과
7	재해보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보험대상 시설범위 확대 필요(하우스는 보험 대상이나, 하우스 관리동은 보험 대상에 미포함) ⇒ (재난지원금) 시설하우스 관리동(농자재 보관용 등)은 시설하우스와 동일하게 설치한 것으로 시설하우스 면적에 포함하여 복구비를 산출하여 지원 가능 ⇒ (재해보험) 하우스 관리동은 농막, 컨테이너, 하우스 등 형태가 다양하며, 농가별로 활용방식도 달라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한 보장은 신중 검토 필요 	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 과	기시행
7	재해보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보험은 가입하였지만 건물만 보상되고 포도나무는 보험가입에 대한 안내가 없어 보험 미가입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됨 ⇒ 보험 미가입된 포도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, 향후 보험가입 시 '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'에 대해서도 지역농협에서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겠음 	농림부 재해보험정책 과 농협손해보험	수용(진행중)
7	재해보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화재보험은 가입 권장을 많이 해서 가입 했지만, 풍수해 같은 보험은 권장도 안하고 처음에 드는 비용도 비싸고 소멸성이어서 많이 가입하지 않음 ⇒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 검토 	농림부 재해보험정책 과	수용(진행중)
7	재해보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가축재해보험 가입 시 가축 및 시설물 모두 보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사전 안내 필요 ※ 시설물 보상에 대한 안내가 없어 미가입, 시설물 피해는 보상을 받지 못함 ⇒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 검토 	농림부 재해보험정책 과	수용(진행중)

연 번	건의 항목	건의사항	소관부처 (기관)	검토결과
8	재난 지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실 소유주와 경작자(임차농)가 다른 경우 재난지원금을 임차농에게 지급할 필요 ⇒ 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은 소유자에게, 농작물과 생계비 지원은 실경작자에게 지급. 다만, 소유자의 주생계수단 등 확인 필요 아울러, 소유자가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시군에서 농지법에 따라 농지 처분 등 조치 필요 	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 과	기시행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말, 지렁이, 염소 등 가축 사육시설 지원 여부 ⇒ 대가축, 중가축, 소가축에 준하는 해당 축사를 적용하여 복구비를 산출하여 지원 가능 	농림부 축산경영과	기시행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하우스 관리동(농자재 보관용 등)에 대한 복구비 지원 여부 ⇒ 시설하우스 관리동(농자재 보관용 등)은 시설하우스와 동일하게 설치한 것으로 시설하우스 면적에 포함하여 복구비를 산출하여 지원 가능 	농림부 원예경영과	기시행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복구비 단가에 포함되지 않은 화훼 등 농작물의 복구비 지원 여부 ⇒ 복구비 단가에 설정되지 않은 품목은 유사품목으로 복구비를 산출하여 지원 가능 	농림부 원예경영과	기시행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콩나물 재배사가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여부 ⇒ 콩나물 재배도 농업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, 재배사의 형태(판넬, 하우스 철재 구조물)에 따라 유사항목을 적용하여 지원 가능 	농림부 원예경영과	기시행